

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운영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운영내규는 AI 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(Department of Autonomous Systems Engineering)(이하 '본 학과'로 칭함)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학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학과교수회의

제2조 (구성과 소집) ① 본 학과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과의 전임교수 전원로 학과교수회의를 구성하고, 학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
② 학과 전임교원은 연구년 및 사전 출장 허가를 득한 경우나 수업 및 학사일정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교수회의에 참석해야 한다.
③ 학과교수회의는 학과장 또는 학과 전임교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학과 전체 전임교원의 1/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3조 (심의사항) 학과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
2. 운영내규를 포함한 학과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신입교원 초빙분야 결정 및 학과 추천에 대한 인준
4. 학과의 공간 활용 결정 및 변경
5. 교과과정 수립 및 개편의 결정
6. 학과위원회 설치, 운영 및 폐지
7. 학과소속 교수의 전학부(과)
8. 기타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 (의결 정족수) ① 학과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재적인원은 학과 전체 전임교원 수에서 연구년 중인 전임교원을 제외한다.

- ③ 개의 전후에 학과교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수가 위임한 사실이 있는 경우, 위임한 자의 수를 출석인원 수에 포함한다
- ④ 개의 이후에 출석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남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
제3장 학과위원회

- 제5조 (위원회 구성 및 역할)** ① 본 학과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학과 교수회의의 위임에 의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과운영위원회 및 교과과정위원회 등을 둔다.
- ② 학과운영위원회는 학과 운영에 대한 자문과 의견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학과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업무를 담당하며,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이 임명한 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교과과정위원회는 학과 교과목의 운영과 교과과정 수립안 및 개편안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, 위원회의 구성은 학과교수회의 및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- ④ 여타 학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학과교수회의 및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제4장 교과과정

- 제6조 (교과과정 편성 및 심의)** 교과과정 편성은 학칙 제18조에 따른다.
- ① 교과과정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과과정개편안을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 - ②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과과정개편안은 학과 전체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다.

제5장 졸업 및 학위

- 제7조 (졸업학점)** 졸업학점은 학칙 제26조(졸업학점), 학칙 시행세칙 제 11장(졸업)에 따르며, 본 내규가 정하는 다음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.<개정 2025.11.1.>

기본전공	단일전공	다전공		
	심화전공	복수전공	부전공	연계융합전공
45학점	24학점이상	42학점이상	24학점이상	36학점이상
총이수학점	69학점	87학점	69학점	81학점

- ① (기본전공 이수요건) 본 학과의 모든 학생은 본 학과 교과과정의 전공과목을 45학점 이상

이수하여야 하며,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(단일전공 및 다전공) 본 학과의 모든 학생은 주전공 이수외 더불어 부전공, 복수전공, 연계·융합전공 (이상 다전공) 또는 자율주행 심화전공 (단일전공)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. 심화전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다. 부전공, 복수전공 또는 연계·융합전공을 신청할 경우 심화전공은 당연 포기되며, 부전공, 복수전공 또는 연계·융합전공을 중도포기할 경우 심화전공으로 당연 재진입한다.

③ 삭제 <2026.01.19.>

④ (교양과목 이수) 본 학과의 모든 학생은 본 학과 교과과정에 정하여진 교양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, 본 학과에서 인정하는 교양과목에 한해서 교양학점으로 인정된다.

⑤ (타 학부(과) 교과목 인정) 타 학부(과)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본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은 주전공 (기본전공, 심화전공) 학점으로 인정된다. 본 학과의 주전공 (기본전공, 심화전공) 학점으로 인정된 과목은 부전공, 복수전공 또는 연계·융합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
⑥ (캡스톤디자인) <개정 2026.01.19.>

1. 모든 학생은 캡스톤디자인Ⅱ를 이수하는 학기에 발표회를 통해 평가를 받고 심사에 통과해야 하며, 해당 과목의 결과물을 소정의 양식에 맞추어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6.01.19.>

2. 천재지변, 감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표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, 해당 학기에는 보고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.<개정 2026.01.19.>

3.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칙의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고, 「캡스톤디자인」 과목을 한 학기만 이수한 후 KIC급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, 조기졸업이 가능하다.

<신설 2026.01.19.>

4. 장기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은 인턴십에 참여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「캡스톤디자인」 수업을 대체인정한다.<신설 2026.01.19.>

제8조 (졸업 및 학위) 졸업 및 학위 수여는 학칙 제28조(졸업 및 학위)에 따르며, 전공별 이수요건을 만족한 학생에 대하여 학위증에 학위와 이수한 전공을 표기한다.

제9조 (졸업인증) 졸업인증제는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3(졸업인증제)에 따른다.

제6장 재입학 및 학기 재수

제10조 (재입학 심사) 재입학은 학칙 제11조(재입학)에 근거하여 다음 방식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
① 재입학 심의위원회는 학과장과 학과장이 임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재입학 신청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재입학 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심층면접은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, 잔여 재학 기간 내 졸업 가능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며, 면접방식 및 출제범위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.

1. 심층면접은 본 학과 전공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구두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.
2. 구체적인 출제범위와 방법은 재입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별도의 공고가 없으면 직전 학기에 준하여 시행한다.

제11조 (학기재수 및 과목재수) 학기재수 및 과목재수는 학칙 제25조와 학칙 시행세칙 제29조 (학기재수 및 과목재수)에 따른다.

제7장 편입, 전과 및 복학

제12조 (편입, 전과 및 복학)

① 편입생의 선발, 전공 배정 및 학점인정 등에 대한 사항과 편입, 전과 및 복학에 관한 일반사항은 학칙 제10조(편입학)와 제37조(전과), 제41조(복학)에 따른다.

제8장 장학금

제13조 (장학금의 지급)

① 장학금의 지급은 학칙 제61조에 따르며,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한다.

1. 직전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
2. 전공과목(재수강 포함) 이수학점 기준은 **2학년, 3학년 12학점 이상, 4학년 9학점 이상**
(단, 1학년은 교양필수 이수 학점이 높은자, 전공현장실습 제외)
(2026년 2학기 장학금지급부터 적용) <개정 2026.01.19.>

② ①항 이외의 장학 관계 사항은 학과장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4조 (동점자 처리규정) 제13조 ①항을 만족하는 자로서 두 명 이상의 성적이 동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다.

- ① 직전학기 전공 이수학점이 많은 자
- ② 직전학기 전공과목 평점이 높은 자(단, 전공평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필수, 전공선택 순의 평점이 높은 자) (2026년 2학기 장학지급부터 적용) <개정 2026.01.19.>
- ③ 직전학기 총 이수학점이 많은 자
- ④ 누적 평점이 높은 자

제9장 현장실습

제15조 (현장실습) 현장실습은 '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'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운영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운영내규는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하되, 2026년 3월 01일부터 적용한다.